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비디오판독 규정

본 규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는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비디오 판독 대상경기

- ① 중계방송 영상과 KBSA 실시간 경기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비디오 판독을 실시한다.
- ② 중계방송이나 KBSA 실시간 경기영상이 없을 경우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 ③ 중계방송 화면과 KBSA 카메라 영상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경기지연에 따른 방송중단 등 중계용 영상화면과 KBSA 카메라 영상에 의한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의 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이때 감독은 심판의 최종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비디오 판독 요청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비디오 판독 장소 및 책임자, 판독인원

- ① 비디오 판독은 현장에서 영상기기를 통해 실시한다.
- ② 비디오 판독의 책임자는 심판팀장이며 판독인원은 심판팀장을 포함하여 총 3인(심판위원회 위원, 심판팀장, 대기심판) 이내로 한다.
- ③ 비디오 판독이 실시되는 동안 그라운드에 남아있는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 이전의 판정이 내려진 상태로 양 팀의 선수단을 위치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 ④ 비디오 판독이 완료된 후 심판팀장을 통해 전달받은 최종 결과를 해당 판정을 한 심판 외에 선임심판(해당 판정을 한 심판이 선임심판일 경우 차선임심판)이 판정을 내린다.

3.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

- ① 홈런에 대한 판정
- ② 내·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캐치/노캐치
- ③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단, 다음의 플레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다.

- (a) 주자가 2루로 진루하기 위한 시도 중 1루 베이스를 돌아 2루로 행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 (b) 공식야구규칙 5.09(b)(2) '1루를 밝은 후 베이스 라인에서 벗어나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였을 경우'에 의거하여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버렸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

- ④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 ⑤ 몸에 맞는 공

타자가 공에 맞았을 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는지, 스윙을 했는지, 피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님

예) 투구가 배트에 맞았으나 심판은 몸에 맞는 공이라고 판정한다. 수비팀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결과 선임심판이 공이 배트에 맞았다고 최초 판정을 번복한다. 타구가 파울이었다면 선임심판은 파울이라고 판정하고, 페어일 경우 타자주자의 위치를 배정하는데 있어 수비팀이 타자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시도했는지 여부, 타자주자가 진루하려고 시도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⑥ 타자의 파울/헛스윙(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 또는 타자가 착용한 경기용구나 배트에 맞는

경우 포함)

⑦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⑧ 더블 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규정

* 공식야구규칙 6.01(i)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에 대한 심판의 결정만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며 더블 플레이의 방해가 6.01(a)(6) '주자가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한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방해한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타자주자에게도 동료선수의 방해에 의하여 아웃을 선고한다. 이 경우 볼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다.' 또는 (7) '타자주자가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한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타자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하고 어느 곳에서 병살이 이루어지려고 했는지에 관계없이 본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이 경우 볼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에 해당할 경우 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다.

⑨ 1루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 공식야구규칙 5.09(a)(8) '타자주자가 본루에서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달리는 동안 3피트 라인을 벗어나 1루 송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하는 심판의 판단' 및 6.01(a)(10)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피하지 않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에 의거하여 타자 또는 주자가 수비하는 야수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⑩ 공식야구규칙 5.08(a)에 의거한 3아웃 이전 주자의 득점

⑪ 주자의 누의 공과

⑫ 주자의 선행주자 추월

⑬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 태그 업할 때 일찍 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4. 비디오 판독의 신청

① 비디오 판독은 각 팀의 감독만이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독이 부상, 질병, 퇴장 등 합당한 이유로 감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코치가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나 선수가 신청한 경우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거부해야 한다.

④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은 판독 요청 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감독은 심판판정 후 30초 이내에 비디오 판독을 구두 또는 시그널로 심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심판은 오른손을 위로 들어 비디오 판독 신청이 있었음을 선임심판, 기록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심판은 감독의 비디오 판독 신청이 적절한 시간 안에 이루어 졌는지 판단하여 비디오 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감독의 신청이 늦었을 경우 심판은 재량으로 비디오 판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⑦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에 대하여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경우 감독은 심판의 최초 판정 후 10초 안에 덕아웃 또는 필드 안에서 신청해야 하며, 주심은 양 팀을 필드에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

⑧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하여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경우 감독은 심판의 최초 판정 후 10초 안에 덕아웃 또는 필드 안에서 신청해야 하며, 주심은 수비팀 선수들이 필드에 남아있도록 해야한다.

- ⑨ 플레이 종료 후 투수교체를 하는 경우 수비팀 감독은 투수교체 사인을 내기 전에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야 하며, 공격팀 감독은 새로 경기에 들어올 구원투수가 워닝트랙을 밟기 전이나 필드 상의 볼펜에서 몸을 풀 경우 파울라인을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수비팀 감독이 공격팀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서둘러 구원투수를 투입할 경우 선임심판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격 팀 감독에게 비디오 판독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 ⑩ 심판이 비디오 판독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는 선수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5. 비디오 판독의 기회

- ① 기회는 정규이닝 기준 팀 당 2회으로 하며 정규이닝에서 비디오 판독으로 심판의 판정이 2회 모두 반복될 경우 해당 팀에게 1회의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연장전에 한해 팀 당 1회의 기회가 추가된다.
 - ② 홈런 타구 비디오 판독은 감독에게 주어진 2회의 기회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만약 감독이 대상이 아닌 판정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선임심판은 감독에게 해당 사안이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팀은 비디오 판독 기회를 유지한다. 감독이 요청한 플레이가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는지 확신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심판은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심판과 의논할 수 있다.
 - ④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은 두 가지 이하의 플레이에 대하여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감독의 기회는 각각 플레이에 대한 기회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두 가지 플레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예) 1사 1루 상황, 타자가 2루 땅볼을 쳤다. 심판은 1루주자가 2루에서 아웃되고 타자주자도 1루에서 아웃되었다고 판정한다. 이 때 공격팀 감독은 2루 아웃, 1루 아웃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감독은 2번의 기회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비디오 판독의 절차

- ① 비디오 판독에 참여하는 판독위원은 심판팀장을 포함하여 총 3인 이내로 한다.
- ② 감독으로부터 비디오 판독 요청을 받은 심판은 오른손을 위로 들어 선임심판, 기록원에게 시그널로 통보한다. 이 사이 해당 심판은 대기 위치에서 선임심판의 판독결과를 통보받는다.
비디오 판독이 시작된 후 3분 안에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원심 유지로 판정한다. 단,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판독이 지연되거나 복합적인 규칙 등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독시간 3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디오 판독시간은 해당 루심과 선임심판이 대기장소에 정렬하는 시점부터 계측한다.
- ③ 심판팀장은 판정반복 여부를 선임심판에게 통보하고, 만약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초 판정이 반복되었다면 선임심판은 주자의 위치 배정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기록원은 비디오 판독 시행 및 결과를 기록지에 표시한다.

7. 경기의 지연 및 제재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감독, 코치, 선수 또는 팀 관계자가 해당 팀의 비디오 판독 결정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심판은 감독에게 즉시 비디오 판독 기회 사용 여부를 결

정할 것을 통보하고 경고할 수 있다. 심판의 경고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지연을 시킨다면 선임심판의 재량으로 해당 팀의 비디오 판독 기회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팀을 추후 제재할 수 있다.

8. 양 팀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

- ①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팀 감독 모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비디오 판독은 요청한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만약 먼저 비디오 판독된 판정에 대해 판독관이 내린 결정이 그 뒤에 판정을 판독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선임심판은 그 뒤의 비디오 판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팀에서 요청한 기회가 비디오 판독되지 않았다면 해당 팀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은 없던 것이 되며 그 팀의 비디오 판독 기회는 유지된다.
- ③ 만약 양 팀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팀은 해당 루심과 선임 심판(해당 판정을 한 심판이 선임심판일 경우 차선임심판)이 대기장소에 정렬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최초 판정번복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팀의 감독은 해당 판정을 한 심판에게 같은 플레이 안에서 비디오 판독이 가능한 다른 판정을 비디오 판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예1) 2사 주자 없는 상황. 타자가 외야로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쳤다. 심판은 이 공이 그라운드에서 먼저 바운드 된 후 야수의 글러브로 들어갔다고 판정하고, 이 때 2루까지 진루하려던 타자 주자는 2루에서 아웃된다. 수비팀은 타자주자가 2루에서 아웃되며 이닝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타자가 타격한 라인드라이브성 타구가 바운드가 먼저 되고 글러브로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만약 공격팀이 2루에서 타자주자가 태그 아웃된 플레이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선임심판이 이를 번복한다면, 수비팀은 선임심판의 번복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외야에서 타자의 타구가 바운드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예2) 2사 주자 1루 상황. 타자가 외야로 플라이볼을 치고 이 타구는 수비수가 포구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다. 그리고 주자는 3루까지 진루하려는 과정에서 3루에서 아웃이 선언되며 이닝이 종료된다. 공격팀 감독은 3루에서의 플레이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선임심판은 이를 세이프로 번복한다. 수비팀이 외야 포구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선임심판은 이를 이닝의 3번째 아웃이 되는 플라이 타구라고 번복한다.

이 경우 타자의 플라이 타구가 외야에서 포구되며 3아웃으로 이닝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3루에서 있었던 플레이에 대한 이전의 비디오 판독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3루에서 있었던 플레이에 대한 이전의 비디오 판독 요청은 무효로 간주된다.

9. 비디오 판독 후 감독의 결정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 판정이 번복되면 플레이 이후 잘못된 판정으로 영향을 받아 내려진 감독의 결정은 무효화된다. 이 경우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인 결정을 유지하거나 바꿀 수 있다.

예1) 플레이가 이루어진 후 수비팀 감독이 투수교체 사인을 낸 직후 공격팀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다. 비디오 판독 결과 판정이 번복된다. 이 때 판독관의 결정이 발표된 후 수비팀 감독은 직전에 이루어졌던 투수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예2) 무사 주자 3루 상황. 타자가 투수의 투구에 스윙을 하면서 배트가 포수의 글러브를 쳤고 포수의 방해가 선언된다. 스윙을 하면서 타격한 공은 좌측 외야로 날아가 포구된다. 3루주자는 이 때 태그 업을 하고 아슬아슬하게 홈에서 득점한다. 공식야구규칙 5.05(b)(3)에 따르면 포수의 방해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공격팀 감독은 방해 페널티(타자는 1루로 진루권을 얻고 주자는 3루로 돌아간다) 또는 플레이의 결과(타자는 아웃, 3루주자는 득점) 중 선택할 수 있다. 공격팀 감독은 플레이의 결과를 선택하기로 한다. 수비팀 감독은 3루주자가 홈에서 득점했을 때의 판정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고 선임심판이 최초 판정을 번복해 주자가 홈에서 아웃된다. 선임심판이 결정한 바에 따라 최종 결과를 알게 되면, 공격구단 감독은 플레이의 결과를 택하기로 했던 최초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단, 포수의 방해, 타자의 방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님)

10. 비디오 판독의 특수성

감독이 비디오 판독 기회를 사용할 경우 감독은 어느 특정 판정에 대하여 비디오 판독을 원하는 것인지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언급할 필요는 없다.

예1) 1루에서 벌어진 포스 플레이의 '아웃'에 대하여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 감독은 '송구를 받는 수비수의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졌다, 공이 1루에 닿기 전 주자가 먼저 베이스를 밟았다' 등의 얘기를 할 필요 없다. 또한 감독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판정에 대해서는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2) 주자가 런다운에 걸렸을 때 심판이 수비수가 태그를 못했다고 판정하고 주자의 세이프를 선언한다. 수비팀 감독은 이 최초 판정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한다. 선임심판은 수비수가 주자를 태그하지 못한 것을 재확인했으나 세이프를 선언된 주자가 선행주자에 의해 추월당하는, 공식야구규칙 5.09(b)(9)의 위반을 발견한다. 감독은 오직 태그 플레이에 관해서만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기 때문에 선임심판은 추월주자에 관해 심판이 판정하지 않은 사실을 바로잡을 수 없다 (단, 스리피트 위반 여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님)

11. 비디오 판독 신청 및 결과는 최종적

- ① 감독이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② 선임심판이 비디오 판독에 의해 결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판정에 대한 판정 유지나 번복, 그리고 주자의 위치 배정 등 필요에 의해 실시된 모든 행위는 최종적이고 양 팀에 적용되며 이는 더 이상의 검토나 수정의 대상이 아니다.
- ③ 비디오 판독이 실시되면 선수단 및 양 팀의 관계자는 더 이상 선임심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심판은 선수단 및 관계자에게 퇴장을 명한다.
- ④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예 : 플레이가 대상이 아니거나, 선임심판이 비디오 판독 사용

요청을 거부함)에서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논란이 되는 판정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의 화면을 봤다는 언급을 한다면 이 사람은 경기에서 즉각 퇴장의 대상이 된다.

12. 비디오 판독의 정정

비디오 판독 결과 최초의 판정이 번복된다면, 선임심판은 처음부터 옳은 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양 구단이 위치해야 할 상황을 만들도록 정정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서 번복되는 모든 판정에서 나오는 주자의 배치에 대한 결정은 공식야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임심판이 결정한다.

- ① 주자를 배치할 때는 플라이볼의 깊이, 주자의 스피드, 플레이가 이루어졌을 때 주자의 위치, 아웃카운트, 잘못된 판정이 공격 또는 수비팀 선수들의 이어지는 행동이나 위치에 영향을 끼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② 선임심판이 잘못된 판정으로 공격, 수비팀 선수들의 이어지는 행동이나 처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판정은 바꾸지만 영향 받지 않은 주자들의 위치에 대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한다.
- ③ 선임심판은 판정이 옳게 내려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팀의 득점을 인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 ④ 주자의 위치 배정이나 주자 아웃 선언, 득점 및 득점 무효에 대한 선임심판의 결정은 최종이며 양 팀에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논란하거나 항의하는 감독 및 팀 관계자에게는 퇴장을 명한다.

13. 공식기록원

선임심판은 비디오 판독시 공식야구규칙 9.00의 적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공식기록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